
건설관련 공제조합 개편방향

2021. 2. 9

국 토 교 통 부

순 서

I. 추진배경	1
II. 공제조합 및 운영위원회 현황	2
III.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점	4
IV. 조합개편 정부역할 및 그간 추진경과	5
V. 조합 경영혁신 방안	7
VI.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10
VII. 향후계획	11

- 〈별첨〉 1.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세부내용
2.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I. 추진배경

- 공제조합은 1960년대에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의 의무출자*를 통해 설립

* 건설업체는 「건설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시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며, 출자금에 비례(최대 35배)하여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보증서 발급가능

- 조합은 건설업체들의 의무출자금 및 보증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규모의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

* (출자금, '19년) 산업은행 19조, 수출입은행 12조, 국민은행 2조, 우리은행 3조

< 공제조합 현황 ('19년말) >

구 분	설립	조합원	출자금	보증규모	연매출	직원수
건설공제	1963	12,521개사	6.1조	110.5조	4,518억	457명
전문공제	1988	52,850개사	4.9조	29.8조	3,747억	434명
기계공제	1996	7,822개사	0.8조	5.3조	400억	68명
합계		73,193개사	11.7조	145.6조	8,665억	959명

- 그간 공제조합은 건설업의 압축성장(기성액 '73 3,165억 → '19 255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조합개편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
 - (조합 방만경영)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의 상대적으로 용이한 영업 구조에 비해,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혜택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
 - (협회의 과도한 개입)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와 별개로 협회장 및 시도회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을 실질적 경영
- 최근 건설산업은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업체들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혁신역량 강화 중
 -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스스로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이루어내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

II. 공제조합 및 운영위원회 현황

1. 공제조합

- (설립근거) 「건산법」상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통합 마련되어 있고, 사업범위, 보증대상 및 한도, 운영위원회 근거 등이 규정

* 건설공제와 전문공제는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었으나 '96년 건산법으로 통합

- (출자 및 보증실적) 건공은 상위 1,000개 업체가 전체 자본금의 43% 출자 및 67% 이용, 전공은 상위 5,000개 업체가 34% 및 72%

< 보증실적 ('19년말) >

구분		출자금액 (억원)		보증금액 (억원/연)		보증수수료	
			(%)		(%)		(%)
건설공제	전체	61,690	100	512,292	100	2,285	100
	1,000위	26,223	43	333,365	65	1,527	67
전문공제	전체	47,810	100	164,281	100	972	100
	5,000위	16,373	34	88,493	54	697	72

- (영업실적) 건산법 등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증상품(약 100만건) 판매수익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어 연 1,500억원 내외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19년말) >

구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건설공제	3,587억	2,357	931	112	1,533
전문건설공제	1,850억	1,633	1,897	93	1,452
기계설비공제	201억	225	210	14	129

- (재무건전성) 조합의 자체 리스크 관리 노력과 함께 다단계 하도급 규제강화(직접시공 확대) 등에 따라 재무건전성도 전반적으로 양호

< 재무건전성 ('19년말) >

구분	유동성비율		리스크기준자본비율	
	현황	감독기준	현황	감독기준
건설공제	3,018%	100% 이상	352%	100% 이상
전문건설공제	1,577%		587%	
기계설비공제	3,994%		589%	

2. 운영위원회

□ (기능) 건산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이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나,

○ 실제로는 세부사업계획, 예산안·차입금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공제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기구 역할

* ❶ 조합의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❷ 예산안 및 ❸ 차입금에 관한 사항, ❹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❺ 기타 정관에 정하는 사항

구 분	구 성	주요 기능
총 회	대의원 200인 이내	정관변경, 조합원 제명, 운영위 선·해임 등
운영위	총 30인(조합원 13인 등)	사업계획, 예산안 등 대부분의 의사결정
이사회	이사장 및 6인 이내 이사	사실상 집행기능 수행

□ (구성)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과반 미만

- (조합원 위원) 총회에서 선임하는 7명 이상 13명 이하
- (당연직 위원) 건설정책국장, 국고국장, 해당 협회장, 해당조합 이사장
- (전문가 위원) 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상 13명 이하

< 공제조합 운영위원 현황 ('21.2월 기준) >

구 분	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	기계설비공제
합계	29	30	19
조합원 위원	12(1석 공석)	13	7
당연직			
건설정책국장	1	1	1
국고국장	1	1	1
협회장	1	1	1
조합 이사장	1	1	1
정부추천 전문가	13	13	8

□ (선출방식) 위원장 및 조합원 위원 모두 선거 없이 선출

- (위원장) 운영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나, 별도 토론이나 제청 없이 협회장(건공·기공) 또는 조합원 위원(전공)을 선출
- (조합원위원) 법령·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운영위원장이 전형위원회(협회장 등)를 구성하여 위원 선임

Ⅲ.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점

① 공제조합의 방만한 경영

-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급여,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은 과도

* (건공) 업추비 23억, 성과급 35억 (전공) 업추비 13억, 성과급 29억 (HUG) 업추비 3.4억

- 또한 온라인 업무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면방식 위주로 소규모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경쟁력 저하

* (지점당 직원수, '20년) 건공 7명, 전공 8명, 기계공 5명, SGI 15명, HUG 26명

- 대규모 여유자금의 투자 수익률이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저조

* (수익률, '20년) 건공 2.3%, 전공 4.5%, 기계공 2.9%, 국민연금 11.3%, 공무원연금 8.3%

② 협회가 조합경영에 과도하게 개입

- 협회(피보증자)와 공제조합(보증자)은 이해관계 상충 우려

- 협회 의사결정 구조는 1사1표이나 조합은 1좌1표(1사=1만좌=1만표)

- 협회는 건설업체의 보증부담 완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선출직인 협회장은 소액 출자자의 보증·융자 민원 등에 취약 우려

- 협회장과 시도회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

- 협회장이 관행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협회장이 구성한 전형 위원회에서 시도회장 등을 운영위원으로 선임(최장 12년 재임 사례)

- 협회장은 운영위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제조합과 이해 상충되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협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구

* 건공은 산하 연구원 및 신문사에 연간 약 100억원, 전공은 약 40억원 지원

IV. 조합개편 정부역할 및 그간 추진경과

1. 정부 역할

① 조합원(건설사)은 공제조합의 주주이자 채무자

- 건산법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조합은 조합원에 대해 출자금의 8~35배 보증

⇒ 조합에서 보증을 받는 규모가 건설업 등록을 위한 의무출자금 규모를 크게 초과하므로, 조합원은 공제조합의 '잠재적 채무자'

구분	출자금	보증금액	출자금 대비 보증금액
건공	6조 2,886억원	110조 4,590억원	17.6배
전공	5조 1,134억원	29조 8,144억원	5.8배
기공	7,878억원	5조 3,600억원	6.8배

② 보증사고 과다 발생 시 조합에 공적자금 투입

- 건설업 위기발생 시 조합은 출자금을 초과하는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대응 곤란하고 정부의 공적지원(Last lender) 불가피
-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무분별한 대출보증 및 대규모 보증사고 발생 등으로 부실화되어, 정부지원 하에 경영정상화
 - '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 시, 주택기금 및 금융기관이 약 2.8조원 지원 (조합원은 3.2조원 중 2.4조원 감자)

③ 이에 따라, 「건산법」에 국토부의 조합 감독규정 명시

- 건산법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토부의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근거 국토부는 「공제조합 감독기준」 고시
- 공제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 다수의 공제조합에서 운영위원회의 조합원 위원 수를 1/2미만으로 규정

2. 그간 추진경과

□ 공제조합 개편은 오래된 개혁과제이나, 장기 지연

- '07년, 권익위에서 공제조합의 의사결정 체계 개선 권고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건설 관련 단체 출신이 맡아 의사결정을 주도하므로 전체 조합원의 공정한 의견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패통제 시스템 미비 → 개선권고

- '09년,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과제로 조합 운영위원회 개편이 포함되었으나 미 추진

□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산업혁신 차원에서 과감한 조합개혁 추진 중

- '19년, 연구용역을 통해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마련(13개 과제)

- 이중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은 핵심 사안으로 우선 추진

- '20년, 국토부 국감에서 운영위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발표

(국토부장관 답변)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맞게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감 후속조치로 조합 경영혁신과 운영위 개편 동시 추진

- '20.11월, 협회장·이사장 면담 등을 통해 혁신방안 사전협의

- '20.11월, 조합 경영혁신 TF(국토부·공제조합·협회 참석)를 구성하여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경영혁신 방안 마련('21.2월)

- 운영위원회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1.30~'21.1.11)

- 제기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업계 등과 총 17차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정대안 마련

V. 조합 경영혁신 방안

◆ 조합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되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은 과감하게 줄여서, 그 편익을 보증수수료 인하 등의 형태로 조합원에 귀속

□ (지점축소) 건공은 10개, 전공은 20개, 기공은 3개로 과감하게 축소

구분	최대치	현재	개편(안)
건설공제	40개('05)	39개	• 34개로 축소('21.12) → 7본부+3지점('22.6)
전문공제	57개('95)	32개	• 28개로 축소(~'22.2) → 24개(~'24.2) → 20개(~'25.2)
기계공제	21개('95)	6개	• 5개로 축소(~'21.6) → 3개(~'23.2)

□ (업추비 등) '22년은 매출액의 0.3%로 한도를 설정하고, '25년까지 0.25% 이하로 축소 → '22년은 '20~'21년 평균 대비 30% 내외 감축

○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25.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

* (現) 사용자·일자·금액 관리 → (改) 사용자·일자·금액·사용목적 관리

- 업추비 등 지출내역은 감독기관 요구 시 공개하고, 기관장 지출 내역은 공공기관 공개 수준에 준하여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

구분	'20년 예산	'21년 예산	'22년 개편(안)
건설공제	25.7억	15.0억원	14.2억원
전문공제	14.8억	14.8억원	10.3억원
기계공제	3.5억	4.1억원	2.7억원

□ (성과급) ①리스크관리, 투자수익율 등 전제조건 달성 시에만 지급하고, ②지급 수준도 수익성 및 목표 초과수익률 등에 연동

① 유동성비율, 자기자본비율, 신용등급, 목표수익률 달성 여부 등

② (일반성과) 당기순이익/인건비 등, (특별성과)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초과수준 등

○ 건공의 경우, '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8 → 17.4억원(△50%)으로 감소 추정되며, 전공은 20% 이상 감축 전망

- (복리후생비)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월동보조비 등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은 폐지 → 건공 18%, 전공 14%, 기공 26% 축소(~'25년)

구 분	건공	전공	기공
'21년 예산	33.7억	25.1억	2.7억
'25년까지	27.7억	21.6억	2.0억
감축금액	△6억 (△18%)	△3.6억 (△14%)	△0.7억 (△26%)

- (임원퇴직금) 3개 조합 모두 임원퇴직금 배수를 1배로 축소하고, 퇴직위로금 추가급은 삭제(기존 임원을 대상으로 하되, 시행일부터 적용)

* 퇴직금 = (연봉/12 × 퇴직금 배수 × 임기) + 퇴직위로금 추가급(퇴직금의 1/2)
 * (건공) 퇴직후 고문료 지급은 신규 임원부터 폐지

구분	현재	개편(안)
건설공제	월급여의 2~3배	1배
전문공제	월급여의 2~2.5배	1배
설비공제	월급여의 1.5배	1배

- (연가보상비) 노사협의를 거쳐 '25년까지 연가 보상대상 일수 감축

구 분	건공		전공		기공	
	보상일수	평균(원/명)	보상일수	평균(원/명)	보상일수	평균(원/명)
'21년	16.3일	944만	13.5일	886만	11.0일	253만
'25년까지	12일	695만	9일	591만	9.4일	217만
감축	4.3일	△249만 (△26%)	4.5일	△295만 (△33%)	1.6일	△36만 (△14%)

- (투자수익률) 여유자금 목표수익률을 '25년까지 5%로 상향하고, '21년은 최소 국고채(3년물) + 2.0% 달성 추진(자산운용계획에 반영)

○ 건설공제는 운용자금 3.9조원 중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년 2% → '21년 25% → '24년 50%까지 상향하고 지속 확대 추진

* 전문공제, 기계공제는 현행 80% 수준을 유지

구분	세부방안						
①지점개편	• 온라인 업무비중(95% 내외) 확대를 고려, 건공 75%, 전공 38%, 기공 50% 축소						
	구분	최대치	현재('20.12)	개편(안)			
	건설공제	40개('05)	39개	• (1단계) 34개로 축소('21.12) → (2단계) 7본부+3지점('22.6)			
	전문공제	57개('95)	32개	• (1단계) 28개로 축소(~'22.2) → (2단계) 24개로 축소(~'24.2) → (3단계) 20개로 축소(~'25.2)			
	기계공제	21개('95)	6개	• (1단계) 5개로 축소(~'21.6) → (2단계) 3개로 축소(~'23.2)			
②업추비 등	• '22년은 '20년 대비 30% 내외 감축 → '25년까지는 35% 내외 감축						
	• 기관장 업추비 지출내역 홈페이지 공개, 현금성 대외활동비 사용내역 기록						
	구분	최대치	'20년 예산	'21년 예산	'22년 개편(안)	'25년 개편(안)	
	건설공제	26.2억원 ('17)	25.7억원	15.0억원	14.2억원	11.8억원	
	전문공제	15.3억원 ('17)	14.8억원	14.8억원	10.3억원	9.6억원	
	기계공제	4.1억원 ('21)	3.5억원	4.1억원	2.7억원	2.4억원	
③복리후생비	• 중복항목 통합 및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 폐지 → 건공 18%, 전공 14%, 기공 26% 축소('25년까지)						
	구 분	건공		전공		기공	
	'21년 예산	33.7억		25.1억		2.7억	
	'25년까지	27.7억		21.6억		2.0억	
④임원퇴직금	• 3개 조합 모두 퇴직금 배수를 1배로 축소 → 건공 67%, 전공 60%, 기공 33% 감축(기존 임원을 대상으로 하되, 시행일부터 적용)						
	구분	현재		개편(안)			
	건설공제	월급여의 2~3배		1배			
	전문공제	월급여의 2~2.5배		1배			
	기계공제	월급여의 1.5배		1배			
⑤연가보상비	• 노사협의를 거쳐 '25년까지 연가 보상대상 일수 감축						
	구 분	건공		전공		기공	
		보상일수	평균(원/명)	보상일수	평균(원/명)	보상일수	평균(원/명)
	'21년	16.3일	944만	13.5일	886만	11일	253만
	'25년까지	12일	695만	9일	591만	9.4일	217만
⑥성과급	•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수익성 및 목표 초과수익률 등에 연동						
	→ 건공은 '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8→17.4억원(△ 50%)으로 감소 추정, 전공은 20% 이상 감축 전망						
⑦투자수익률	• (현재) 목표수익률 없음 → (개선) 최소 국고채(3년) + 2.0% 달성 추진 ('25년까지 5%로 상향)						

VI.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 협회의 과도한 공제조합 개입을 차단하고 투명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체 조합원 이익에 부합되도록 조합이 운영되도록 개편

① 협회장·이사장 당연직 위원 제외

- (현행) 협회장 및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
- (개선) 협회장 및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되, '22.5.31일 까지 한시적으로 협회장 및 이사장*의 당연직 유지

*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

②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 (현행) 운영위원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호선
- (개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 중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시행일부터 1개월내)하고, 1명은 정부위촉 전문가 위원으로 선임
- 다만, 조합원이 위원장인 경우 조합과 이해관계 상충이 우려되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제척규정을 도입 ('21.4월 세부방안 확정)

③ 운영위원 잔여임기

- 현 조합원 운영위원의 잔여임기는 60% 내외 보장 (위촉직은 미보장)
- * '22년 종료위원은 '21.12월말, '23년 이후 종료위원은 '22.5월말 임기 종료

④ 운영위원 정수

- (현행) 30명 이내에서 조합원 측(협회장 포함)은 14명(46.7%)
- (개선) 20명 이내에서 조합원 측은 9명(45.0%)

< 운영위원 구성 별 개선방안 >

구 분	현행		개선	
	정원	비율	정원	비율
합계(①+②+③)	30	100%	20	100%
조합원	13	43.3%	9	45.0%
협회장	1	3.3%	0	0.0%
조합원 계(①)	14	46.7%	9	45.0%
이사장(②)	1	3.3%	0	0.0%
정부	2	6.7%	2	10.0%
정부위촉직	13	43.3%	9	45.0%
정부측 계(③)	15	50.0%	11	55.0%

⑤ 운영위원 직접·무기명 투표

- (현행)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운영위원장이 전형위원회를 통해 시도회장 등을 선임
 - (개선) 운영위원은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21.4월 세부방안 확정)
- * 시행령 개정 당시 임기가 만료된 운영위원의 후임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선출

⑥ 운영위원 임기

- (현행) 임기는 3년이나, 횟수 제한 없이 연임 가능 (3년+a)
 - (개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2+2년)
- * 시행일 현재 기 연임(선출과정 무관) 중인 위원은 추가 연임 불가

⑦ 안건 사전협의

- 국토부 승인사항, 예·결산, 기타 재무건전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하여 사전협의 (현재는 규정 없음)

VII. 향후계획

- ☐ (조합 혁신방안) 조합 총회승인 이후 본격 개혁 착수
- ☐ (운영위 개편) 규개위(2월말)·법제처(3월) 심사 등을 거쳐 '21.4월 시행
 - 운영위원장 및 신규 운영위원은 시행일 이후 1개월 내 선출·위촉

붙임2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구분	현행	수정대안																																																						
① 협회장·이사장 당연직 위원 제외	- 협회장은 당연직 위원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건공기공은 협회장, 전공은 조합원	- 당연직 운영위원 제외 - 이사장도 당연직에서 제외 * '22.6.1일부터 시행 - 위원장은 직접·무기명 투표																																																						
②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1인, 호선 (부위원장) 2인, 호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선출하되, 전문가 포함 * 특정 조합원에 한정되는 안건은 전문가 주재																																																						
③ 운영위원 잔여임기	별도규정 없음	잔여임기 단계적 보장(60% 내외)* * '22년 종료는 '21.12월까지, '23년 종료는 '22.5월까지																																																						
④ 운영위원 정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원</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합계(①+②+③)</td><td>30</td><td>100%</td></tr> <tr> <td>조합원</td><td>13</td><td>43.3%</td></tr> <tr> <td>협회장</td><td>1</td><td>3.3%</td></tr> <tr> <td>조합원 계(①)</td><td>14</td><td>46.7%</td></tr> <tr> <td>이사장(②)</td><td>1</td><td>3.3%</td></tr> <tr> <td>정부</td><td>2</td><td>6.7%</td></tr> <tr> <td>정부위촉직</td><td>13</td><td>43.3%</td></tr> <tr> <td>정부촉 계(③)</td><td>15</td><td>50.0%</td></tr> </tbody> </table>	구분	정원	비율	합계(①+②+③)	30	100%	조합원	13	43.3%	협회장	1	3.3%	조합원 계(①)	14	46.7%	이사장(②)	1	3.3%	정부	2	6.7%	정부위촉직	13	43.3%	정부촉 계(③)	15	5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원</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합계(①+②+③)</td><td>20</td><td>100%</td></tr> <tr> <td>조합원</td><td>9</td><td>45.0%</td></tr> <tr> <td>협회장</td><td>0</td><td>0.0%</td></tr> <tr> <td>조합원 계(①)</td><td>9</td><td>45.0%</td></tr> <tr> <td>이사장(②)</td><td>0</td><td>0.0%</td></tr> <tr> <td>정부</td><td>2</td><td>10.0%</td></tr> <tr> <td>정부위촉직</td><td>9</td><td>45.0%</td></tr> <tr> <td>정부촉 계(③)</td><td>11</td><td>55.0%</td></tr> </tbody> </table>	구분	정원	비율	합계(①+②+③)	20	100%	조합원	9	45.0%	협회장	0	0.0%	조합원 계(①)	9	45.0%	이사장(②)	0	0.0%	정부	2	10.0%	정부위촉직	9	45.0%	정부촉 계(③)	11	55.0%
구분	정원	비율																																																						
합계(①+②+③)	30	100%																																																						
조합원	13	43.3%																																																						
협회장	1	3.3%																																																						
조합원 계(①)	14	46.7%																																																						
이사장(②)	1	3.3%																																																						
정부	2	6.7%																																																						
정부위촉직	13	43.3%																																																						
정부촉 계(③)	15	50.0%																																																						
구분	정원	비율																																																						
합계(①+②+③)	20	100%																																																						
조합원	9	45.0%																																																						
협회장	0	0.0%																																																						
조합원 계(①)	9	45.0%																																																						
이사장(②)	0	0.0%																																																						
정부	2	10.0%																																																						
정부위촉직	9	45.0%																																																						
정부촉 계(③)	11	55.0%																																																						
⑤ 운영위원 직접·무기명 투표	선출방식 미규정 * 전형위원회에서 결정 후 총회 선임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																																																						
⑥ 운영위원 임기	3년+연임 (횟수제한 없음)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																																																						
⑦ 안건 사전협의	별도규정 없음	국토부 승인사항, 예·결산 등에 한해 협의 * 정관변경, 보증/융자/어음 요율																																																						

공제조합 경영혁신 방안

I. 자산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 성격이 유사한 기관에 비해 자산배분이 소극적이고 수익률이 낮아 장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여유자금 운용현황 ➡ 자금운용 효율성 강화 필요

- (건설공제) 여유자금이 3.9조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예금과 유가증권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이 2.3% 수준('19년)
- (전문공제) 여유자금 3.7조원 중 81.1%를 수익형 자산에 운용하고 있고, 이중 대체투자는 18% 수준이며, 수익률은 4.5% 내외
- (기계공제) 여유자금 7,009억 중 65.0%를 수익형 자산에 운용하고 있고, 이중 대체투자는 10.9% 수준이며, 수익률은 2.8% 내외

< 공제조합 여유자금 운용현황('20.6.30, 단위: 억원) >

구분	건설공제	전문공제	기계공제
여유자금	39,030 (100%)	37,071 (100%)	7,009 (100%)
수익형 자산	800 (2.0%)	30,054 (81.1%)	4,454 (65.0%)
대체투자	800 (2.0%)	6,669 (18.0%)	770 (10.5%)
'20.6 기준 수익률	2.3%	4.5%	2.8%

- * 수익형 자산 : 단기자금(예금 등)과 장기채권 중 AA 이상을 제외한 자산
- 대체투자 : 수익형 자산 중 구조화된 주식, 채권을 제외한 부동산, PEF 등

< '19년 연기금 투자수익률 >

구분	사업성 기금		보험성 기금		연금성 기금	
	주택기금	방폐기금	고보기금	산재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익률	6.06%	4.75%	7.06%	7.58%	11.31%	8.36%
수익형 비중	94.90%	96.56%	93.47%	96.95%	99.56%	82.37%

*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펀드평가

□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미흡

- (건설공제) A급 이상 안전자산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자금운용위원회 외에 대체투자 등을 위한 시스템(조직·규정 등) 부재
- (전문·설비) 전문공제는 2개 전담조직 및 3개 외부 위원회를 두고 있고, 기계공제도 투자심의위원회 및 전담인력(2인) 운용

개 선

◇ 자산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제의 장기 건전성 확보 및 산업 지원역량 강화

□ 투자수익률 제고

- ① (목표수익률 상향) 여유자금 목표수익률을 5%로 상향하고, 최소 3년만기 국고채금리 + 2.0% 달성 추진 ⇨ 자산운용계획에 반영('21.1)

< 조합별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

구분	'19년		'20년		'21년
건설공제	2.80%	⇒	2.50%	⇒	5.00%
전문공제	4.00%		3.49%		(최소 국고채 3년+2%)
기계공제	2.67%		2.39%		

* 매년 구체적인 목표수익률은 투자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

- ② (투자대상 다변화)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년 2% → '21년 25% → '24년 50%까지 상향하고 자산운용위 통해 지속 확대 추진

* 전문공제, 기계공제는 현행 80% 수준을 유지

- 수익형 자산 중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의 경우 건설공제는 '21년 10% 이상, 전문공제와 기계공제는 20% 내외로 유지

*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 비중은 10~20% 내외

- 대체투자는 PF 채권·준공된 부동산 위주로 투자에서 블라인드 펀드, 준공조건부 부동산, 해외 부동산 등으로 확대

⇨ 자산 비중은 중장기 자산배분계획 등에 반영('20.12~'21.1)하고, 투자 대상·기준 수익률 등을 정한 '자금운용지침' 등 규정 마련('21.4)

- ③ (투자협력 강화) 3개 공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재부의 '연기금 투자풀**'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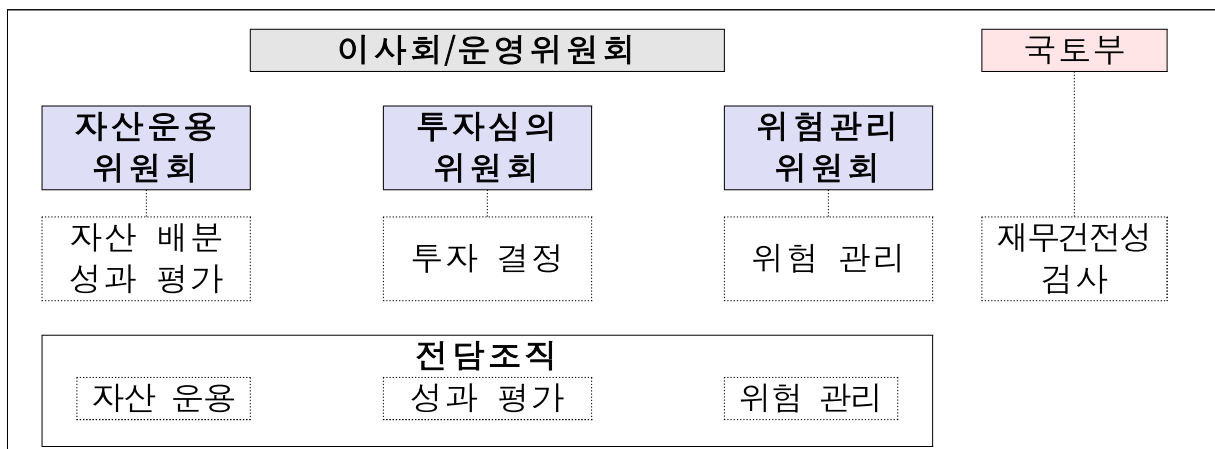
* 기계공제는 규모가 작고, 건공은 위험투자 경험이 없어 단기에 대규모 투자 곤란

** 규모가 작은 소형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주택도시기금 등 대형 연기금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

□ 리스크 관리 강화

- ① (전담조직 설치) 건설공제는 중장기 자산 운용과 투자 심사를 위한 조합내 전담조직을 최소 2개 이상 설치하고,
 - 이미 전담 조직(자금운용팀, 대체투자팀)을 갖춘 전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추가적인 부서를 신설(투자기획팀)하여 전문성 강화
 - * 기계공제는 조직·인원·자금 규모가 작은 만큼 조직 신설 없이 전문인력만 운용
- ② (위원회 설치) 건설공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모든 기관의 위원회는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한 외부전문가로 과반 구성
 - * 전문공제는 투심위, 대체투심위 운용 중, 기계공제는 투심위 운용 중
 - 운영위원회와 자산운용위, 투심위의 역할 분담 명확화(운영규정)
 - * 운영위 : 사업 및 예산 편성 ↔ 자산위·투심위 : 예산사업 외 여유자금 운용
- ③ (리스크 관리 시스템 기능 강화) 위험관리를 위해 설치·운용 중인 전담조직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 현재 각 조합별로 자산(보증·융자)에 대해 시행중인 리스크 관리를 여유자금 운용으로 확대하고, 산업 전반·거시경제에 대한 분석 강화
 - 또한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건산법 제65조제1항)

< 공제조합 투자의사결정 및 리스크 관리 체계 >



- * 자산운용계획 : 자산운용위 의결 → 이사회 보고
- 수익형 투자결정 : (전공) 투심위 심의 → 이사회 결정
- (기공) 투심위 의결 → 운영위·총회 사후보고

II. 지점 운영의 효율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보증·공제 등 업계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편의 증대 및 비용절감 추진 중

○ 건설 관련 공제조합도 보증업무 등에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온라인 처리건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

< 상품별 온라인 처리 비중('19년, 승인건수 기준) >

구분	소계	보증	융자	공제	출자	약정	신용평가
건공	96.0%	97.8%	94.9%	74.8%	0%	92.9%	76.8%
전공	95.3%	98.9%	92.6%	99.2%	0%	16.9%	87.9%
기계공	94.7%	99.5%	95.3%	99.3%	0%	74.1%	0%

□ 다만 공제조합은 변화하는 서비스·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면 방식을 전제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경영비효율 및 경쟁력 저하

○ 전국에 흩어진 소규모 점포가 많아 지점당 직원수가 유사 금융기관 대비 1/2 수준이고, 임차료·관리비·소모품비 등 비용은 2배

< 공제조합별 지점 및 관리비 현황('19년 기준) >

구분	건공	전공	기계공	SGI	HUG
조합원 수(A)	12,521	52,850	15,828	-	-
지점직원 수(B)	268	261	28	1,461	814
지점 수(C)	39	32	6	95	31
지점당 조합원수(A/C)	321	1,652	2,638	-	-
지점당 직원수(B/C)	6.9	8.2	4.7	15.4	26.3
매출액 대비 관리비(%)	33.2	30.1	37.1	14.9	14.7

⇒ 대면 서비스·영업을 위한 다수의 소형점포 보다는 온라인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 필요

[2] 개선방향

- (지점개편) 지점별 업무비중, 조합원 수, 기존 지점간 거리 등을 기준으로 권역별 본부체제로 개편
 - 권역별 본부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점은 본부관리 하에 존치하되, 온라인 업무는 본부에서 담당(전공·기공)
- (업무절차 개선) 온라인 전용상품 확대, 심사절차 단축, 지점방문 최소화(종이서류 폐지, 전자서명 확대 등) 등 개선방안 마련
- (인력조정) 지점개편에 따른 직무전환 및 퇴직 대비 신규채용비율 조정 등을 통해 점진적 개선

[3] 조합별 추진방안

- (건공) 권역별 7개 본부로 개편하고, 전북·영동·제주 3개 지점을 설치하되 본부에 편입
 - (1단계) 이전비용 등 조합 예산확보('21.6) 후 8개 지점을 4개로 통합('21.12완료, 39지점→34지점)
 - (2단계) 2본부 32지점을 7본부 3개 지점으로 통합('22.6월 완료)

< 건설공제 지점개편 검토안(~'22.6) >

현행 (39개 지점)		개편안 (7본부 3지점)	직원 (명)	조합원 (개)	업무량(건)
여의도, 부천, 일산, 안산, 안양, 인천	⇒	수도권(서) 본부	31	1,601	5.8만 (10%)
논현, 서초, 삼성, 강남센터, 수원, 성남		수도권(남) 본부	58	2,552	11.2만 (19%)
종로, 동대문, 강북, 의정부, 원주, 춘천		수도권(북) 본부	41	1,065	8.4만 (14%)
대전, 내포, 천안, 청주, 충주		대전·충청 본부	27	1,449	8.3만 (14%)
광주, 순천, 목포, 중부센터		광주·전남 본부	30	1,370	6.7만 (11%)
전주		전북지점	10	699	3.0만 (5%)
대구, 포항, 구미, 영남센터		대구·경북 본부	29	1,308	6.3만 (11%)
강릉, 삼척		영동지점	8	205	1.3만 (2%)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부·울·경 본부	29	1,823	7.5만 (13%)
제주		제주지점	5	449	1.3만 (2%)
		계	268	12,521	60만(100%)

□ (전공) 온라인 확대 등 변화하는 영업환경을 감안하여 지점 수를 '25.2월까지 20개(현행 32개)로 축소

○ (1단계) 4개 지점을 축소(32→28개)하고, 통폐합 지점의 온라인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 고객센터를 본사에 설치 ('22.2월 완료)

○ (2단계) 8개 지점을 추가 축소('24.2 △4개, '25.2 △4개, 총 28→20개)하고, 보상·소송 등 대면업무 전담 사후관리센터를 권역별 4개 지점에 설치

- 통폐합 지점 등 세부방안*은 조합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 계획

* 수도권 근거리 지점과 지방 소규모 지점을 통폐합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제주·강릉 등)은 소규모 영업소 운영을 검토

- 지점축소 및 사후관리센터 운영계획을 운영위에서 확정('22.3)하고, 시행준비 등을 거쳐 '25.2월 조직개편·시행

□ (기공) 서울과 인천·경기 지점을 통합하여 권역별 5개(현재 6개)로 조정하고, 온라인 보증업무는 보증센터(현재 1개소)로 집중('21.6월 완료)

○ 2개 지점을 추가 축소(5→3개)하고, 사후관리센터를 본사에 설치 ('23.2월 완료)

- 통폐합 지점 등 세부방안은 자연감소 인원 등을 고려하여 검토

< 기계공제 지점개편 검토안(~'21.6) >

구 분	직원(명)	조합원(개)	업무량(건)
서울권(서울·강원·제주), 인천·경기권 ⇨ 수도권	13	8,352	6.0만 (23%)
부산권(부산·울산·창원·경남)	5	2,588	2.0만 (8%)
대전권(대전·세종·충청)	4	1,568	1.3만 (5%)
대구권(대구·경북)	4	1,438	1.1만 (4%)
광주권(광주·전라)	4	1,882	1.7만 (7%)
온라인 보증센터	9	-	13.5만 (53%)
계	39	15,828	25.6만(100%)

III. 업추비 등

□ 현황

- 업추비 등* 한도 및 산정기준 등이 없어 적정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대외활동비·지점활동비 등 유사성격의 지출이 다수 존재

* 업무추진비, 대외활동비(정보활동비), 친목상조비

- 특히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처 미기재 등 불투명성이 존재하고 사적활용 가능성

* 세법상으로도 증빙없는 지출은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42% 고율로 과세

< 공제조합 업추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HUG('19)	건공		전공		기공	
		'19	'21	'19	'21	'19	'21
업추비	344*	1,475	790	670	694	97	152
1인당 업추비	0.4	3.2	1.7	1.5	1.6	1.4	2.2

* 출처: 2019년 감사보고서

< 은행권과 업추비 등 비교('19, 억원, %) >

구분	은 행												건공	전공	기공			
	시중은행						특수은행					평균						
	A	B	C	D	E	F	G	H	I	J	K							
매출액 (A)	209,282	218,567	207,772	297,109	141,648	118,754	132,161	16,763	160,212	252,362	87,688	333,103	4,518	3,747	400			
업추비 등(B)	349	154	373	193	45	19	172	46	118	70	4	140	'19 결산	'21 예산	'19 결산	'21 예산	'19 결산	'21 예산
													23	15	13	15	2	4
B/A (%)	0.17	0.07	0.18	0.07	0.03	0.02	0.13	0.27	0.07	0.03	0.004	0.09	0.51	0.33	0.35	0.40	0.50	1.00

* 출처: 2019년 감사보고서

□ 개선방향

◆ 매출액에 연동하여 ①업추비 등의 예산편성 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하고, ②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

① (한도) 업추비 등(업추비+대외활동비+상조비)은 매출액*의 0.3%** 이내로 한도 설정하고, '25년까지 0.25% 이하로 단계적 축소

* 예산편성 시 최근 회계연도의 매출액 (예; '21.10월 '22 예산편성시 '20 매출액)

** 일반은행의 업추비 등/매출액 비율인 0.09%의 약 3배 수준

- 기관별 특성·경쟁환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경쟁지표 등을 활용하여 산정기준을 마련('21.3)하고, 예산은 한도 내에서 편성

< 업추비 산정기준 >

기본지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재무 지표
경쟁지표	매출증가율, 건적증가율, 조합원수 증가율 등 경쟁강도 관련 지표

* 기계설비공제조합의 경우 매출액 1,000억원 도달 시 적용

② (관리)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25.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

< 대외활동비 관리방안 >

현재	개선
사용자·일자·금액 관리	사용자·일자·금액·사용목적 관리

* 대외활동비 전면 폐지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

- '21.3월까지 업추비 사용지침 및 대외활동비 사용지침 개정

- 업추비 등 지출내역은 감독기관 요구 시 공개하고, 기관장 지출내역은 공공기관 공개 수준에 준하여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

□ 조합별 업추비 등 조정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건공				전공				기계공			
	'19	'20	'21	'22	'19	'20	'21	'22	'19	'20	'21	'22
업무추진비	1,475	1,624	790		670	694	694		97	140	152	
대외활동비	655	657	500		540	640	640		93	110	140	
친목상조비	206	288	210		86	143	143		31	100	118	
업추비 등 계(a)	2,336	2,569	1,500	1,418**	1,296	1,477	1,477	1,033***	221	350	410	270****
매출액(b)	4,518억	4,728억			3,747억	3,852억			400억	438억		
매출대비(a/b)*			0.33%	0.3%			0.39%	0.27%			1.03%	0.6%

* 매출대비(a/b)는 Y년도 접대비 및 Y-2년도 매출액 활용

** 최대 업추비 등 규모(2,615백만원, '17년) 대비 △1,197백만원(△45.8%)

*** 최대 업추비 등 규모(1,529백만원, '17년) 대비 △496백만원(△32.4%)

**** 최대 업추비 등 규모(410백만원, '21년) 대비 △140백만원(△34.1%)

① 건설공제

- '22년은 '20년 예상 매출액 4,728억원의 0.30% 수준인 14.2억으로 편성, '25년까지 매출액의 0.25% 수준으로 감축

* '22년은 '20~'21년 평균금액(20.35억)의 69.8% 수준

② 전문공제

- '22년은 '20년 예상 매출액 3,852억원의 0.27% 수준인 10.3억으로 편성, '25년까지 매출액의 0.25% 수준으로 감축

- '25.1월까지 '21년 대외활동비 6.4억원 중 2억원을 순수 삭감

* '22년은 '20~'21년 평균금액(14.77억)의 70% 수준

③ 기계공제

- '22년은 '20년 예상 매출액 438억원의 0.6% 수준인 2.7억원으로 편성, '25년까지 매출액의 0.55% 수준으로 감축

- '22.1월까지 '21년 대외활동비 1.4억원 중 0.7억원을 임원 급여로 전환

* '22년은 '20~'21년 평균금액(380억)의 71% 수준

IV. 성과급

□ 현황

- 기관별로 성과지표를 토대로 기본급의 일정률을 지급 중이며, 전문공제의 경우 성과지표 없이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경우 지급

< 공제조합 성과급 지급기준 >

구분	건설공제	전문공제	기계공제
성과지표	당기순이익/인건비	-	당기순이익/총자산
지급률('19년)	연봉의 3~15%	월봉의 150%	월봉의 73%
지급액('19년)	3,356백만원	4,164백만원	333백만원

□ 개선방향

◆ ①전제조건 달성 시 성과급을 지급하고, ②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리스크관리 성과에 연동하여 산정

- ① (전제조건)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신용등급, 목표수익율 등 일정노력이 있어야 달성될 수 있도록 설정
- ② (산정기준) 일반 경영성과 및 특별경영성과를 고려한 복합지표를 설정 (지표별 가중치와 항목 등은 기관별 검토)
- ③ (전제조건·세부지표 등 변경) 경제상황·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총회 등을 거쳐 보완·변경

< 경영성과 복합지표 예시 >

일반 경영성과	• 당기순이익/인건비 비율 또는 당기순이익, 사후관리 등에 따라 평가 • 당기순이익 경쟁·비경쟁(예: 1.2:0.6) 보증수익 차등, 임직원 노력도 반영 등
특별 경영성과	• 목표수익률(목표 5%, 최소 국고채 3년+2%) 등 자금운용 성과에 연동

□ 조합별 개선방안

① 건설공제

- (전제조건) ▲ 유동성비율 500%이상, ▲ 리스크기준자본비율 200% 이상, ▲ 국제신용등급(Fitch Rating A이상, A.M. Best A+이상), ▲ 배당금 지급, ▲ 목표수익률 달성* 조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성과급 지급

* '24년까지 수익형자산으로 달성여부 판단, '25년부터는 여유자금으로 판단

- (산정기준) 일반성과는 당기순이익*/인건비 비율을 활용하고, 특별성과는 자산운용 목표수익률 초과수준에 따라 지급

* 경쟁보증 1.2, 비경쟁보증 0.6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당기순이익 산출

** (경쟁보증) 공사사업이행, 부지매입, 하도급대금, 협약채무이행, 기계대여대금, 해외보증

< 일반성과 성과급 시뮬레이션 >

(단위 : 백만원)

구분	'16	'17	'18	'19	'20
경쟁보증수수료(①)	86,936	117,209	107,295	100,395	102,389
비경쟁보증수수료(②)	136,746	140,349	128,302	124,409	126,086
보증수수료(①+②)	228,795	232,098	232,037	222,859	228,475
수정보증수수료 (① × 1.2 + ② × 0.6)	186,371	224,859	205,735	195,119	198,518
조정 당기순이익	129,582	192,990	132,139	125,587	126,127
지급률 (기존 지급률)	12.0% (15.0%)	15.0% (15.0%)	9.0% (12.0%)	6.0% (9.0%)	3.0% (9.0%)
지급금액 (기존 지급금액)	2,946 (4,910)	5,065 (5,065)	3,365 (4,487)	2,326 (3,488)	1,194 (3,581)

< 특별성과 성과급 지급률 >

목표초과 수익률	25bp이상 50bp미만	50bp이상 75bp미만	75bp이상 100bp미만	100bp이상 125bp미만	125bp이상 150bp미만	150bp이상
지급률	0.5%	1.0%	1.5%	2.0%	2.5%	3%

→ '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8→17.4억원(△ 50%)으로 감소 추정(초과수익 75~100bp 달성 시)

② 전문공제

- (전제조건) ▲유동성비율 300%이상, ▲리스크기준자본비율 300%이상, 여유자금 목표수익률(국고채 3년+2%) 달성 조건 충족 시 성과급 지급
- (산정기준) 일반성과는 당기순이익 적정성(30%), 사후관리 성과(35%)로 하고, 특별성과는 자금운용 성과(35%)에 따라 지급
- * 전문건설사는 상품 가격경쟁이 아닌 고객 유치경쟁 발생 → 경쟁·비경쟁 상품 구분 곤란하여 고객유치를 위한 임직원 노력도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구성

< 지급기준안 적용시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률 >

(단위 : 억원)

구 분		‘16	‘17	‘18	‘19
항목	당기순이익	26	18	30	30
	사후관리성과	20	25	30	35
	자금운용성과	35	30	30	30
총 점		81	73	90	95
지급률 (기존 지급률)		100% (100%)	50% (100%)	150% (150%)	200% (200%)
지급금액 (기존 지급금액)		18 (18)	10 (19)	29 (29)	42 (42)

→ 20% 이상 감축 전망

③ 기계공제

- (전제조건) ROA 1%이상 달성 시 지급 가능
- (산정기준) ROA비율에 맞춰 “1”을 기준으로 월 기준급여의 50%
- * 경영목표(자산 1조, ROA 2%) 달성 이후 복합지표 도입 등 성과급 기준 개선

< 지급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

구분	‘15	‘16	‘17	‘18	‘19
ROA	0.25	0.08	0.31	1.12	1.56
당기순이익 (억원)	17	6	24	89	129
자산(억원)	6,823	7,397	7,609	7,940	8,294
성과급지급	월 기준급여 50%	-	-	월 기준급여 50%	월 기준급여 73%
지급금액(억원)	3	-	-	2.18	3.33

V. 복리후생비

- (현황) 기관별로 항목분류가 상이하어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
- (개선방안) 공공기관에 준하여 체계적 관리, 피복비·월동보조비 등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은 폐지(노사간 협의를 거쳐 추진)

< 조합별 복리후생비 개선방안 >

- (건설공제) 피복비, 월동보조비, 귀향여비 등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 폐지
 - 피복비와 월동보조비 3.6억원 폐지, 명절귀향여비 25% 감축(2.4억원), '25년까지 추진
 - '21년 임원 피복비 450만원은 미집행 ('22년부터 폐지)
- (전문공제) 귀향여비를 '25년까지 50% 단계적 축소
- (기계공제) '20년 학자금 예산(16백만원)에 대해, '21년 전액 삭감

< 유사기관 사례 ('19년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건공	전공	기공	A	B	C
임원	현재	24,034	10,032	4,565	1,500	6,012	3,807
	개선	17,136 (△6,898)	10,032	4,565			
임원 정규직	현재	3,369,496	2,513,040	271,679	1,752,512	2,174,681	2,976,490
	개선	2,773,110 (△596,386)	2,155,176 (△357,864)	200,739 (△16,940)			

VI. 임원 퇴직금

□ (현황) 퇴직금은 기초액(월봉)에 1.5~3배(직원은 1배)를 적용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크고, 금액도 과도한 수준

* 3년간 보수총액이 가장 낮은 기공 대비, 건공 퇴직금은 3.1배, 전공은 2.4배 높은 수준

□ (개선방향) 3개 조합 모두 퇴직금* 배수를 1배로 통일하고, 퇴직위로금추가급은 삭제(기존 임원을 대상으로 하되, 시행일부터 적용)

* 퇴직금 = 연봉/12 × 퇴직금 배수 × 임기 + 퇴직위로금추가급(퇴직금의 1/2 이내)

○ 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하는 퇴직 임원 고문료(月 500만원/年) 폐지

* 신규 임원부터 적용

⇒ (감소효과) 건공: △11.7억원, 전공: △6.6억원, 기공: △0.9억원

< 조합별 퇴직금 배수 현황 및 개선 >

구분	건공			전공			기공			건협		전협		기협	
	이사장	전무	이사	이사장	전무	이사	이사장	전무	상무	부회장	이사	부회장	이사	부회장	이사
현재	3	2.5	2	2.5	2.5	2	1.5	1.5	1.5	1	1	3	2	2	2
개선	1														

* 건공의 경우 퇴직금을 '퇴직위로금' 명칭으로 사용하고, 퇴직위로금추가급 명목으로 퇴직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

VII. 연가보상비

- (현황) 건공은 16.3일, 전공은 13.5일, 기공은 11일을 평균 지급일수로 연가보상비를 지급

< 조합별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

- (건설공제) 단협 합의상 연차 중 17일은 사용촉진 불가
- (전문공제) 의무사용: 1·2급 11일, 3·4급 10일, 5·6급 9일
- (기계공제) 지급대상: 1·2급 미지급, 지급일수: 3급 이하 최대 15일 지급

- (개선방향) 노사합의를 거쳐 '25년까지 연가 보상대상 일수 감축

< 조합별 연가보상비 개선방향(안) >

- (건설공제) 연차 의무사용일수 단계적 확대(8→13일) → 평균지급일수 감소(16.3→12일)
 - (전문공제) 연차 의무사용일수 단계적 확대(10→15일) → 평균지급일수 감소(13.5→9일)
 - 보건휴가 유급(6일) → 무급으로 전 환도 노조와 협의예정
 - (기계공제) 연차 최대지급일수 단계적 축소(15→13일) → 평균지급일수 감소(11→9.4일)
- * 의무사용일수 확대 ÷ 최대지급일수 축소

<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19년 기준, 금액: 천원, 인원: 명, 일수: 일) >

구분		연가보상비 지급규모	
		1인당 평균 금액	평균 지급일수
건공	현재	9,438	16.3
	개선	6,948	12
전공	현재	8,862	13.5
	개선	5,909	9
기공	현재	2,533	11
	개선	2,172	9.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 ----- -----.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u>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u>	1. 총회가 해당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u>9명 이하의 위원</u>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현행과 같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현행과 같음)
4. 당해 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삭 제>
5. 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	<삭 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u>8명 이상 13명 이하의</u>	6. ----- ----- ----- <u>9명</u> -----

위원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
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
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
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
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
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
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2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
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
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

--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
여 연임할 -----
-----.

④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직접 · 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
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
원으로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⑦ 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1. 법 제56조제2항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

례) 이 영 시행 전에 1회 이상 연임
되어 재임 중에 있는 운영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운영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해당 공제조합 총
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2
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
른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
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
원장 및 부위원장을 이 영 시행일 후
1개월 이내에 새로 선출 또는 위촉
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제
2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의 임기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
하고 제2항에 따라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운영위원은 임기만
료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
지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2021년 12월 31일

2. 2023년 1월 1일 이후 : 2022년 5
월 31일